

2022. 12. 21. ~ 12. 28.

- 8일간 -

제34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장 성 군 의 회

처리결과

의안 번호	의안명	의결 일자	심사 결과
2335	장성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12.28.	원안가결
2336	장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2.12.28.	원안가결
2337	장성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022.12.28.	원안가결
2338	장성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022.12.28.	원안가결
2339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12.28.	원안가결
2340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12.26.	원안가결
2341	2022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022.12.26.	원안가결
2342	장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12.28.	원안가결
2343	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12.28.	수정가결
2344	장성군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2.12.28.	원안가결
2345	진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2022.12.28.	원안가결

주요내용

1. 장성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자 : 장성군의회회의장(나철원 의원)

○ 제출일자 : 2022. 12. 13.

○ 제안이유

- 장성군의회 의원발의 조례 등의 제·개정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한 자문과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고문변호사 정원을 조정하여 다양한 법령 해석을 통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고문변호사 위촉 정원 조정(안 제2조)
 - 고문변호사 위촉 정원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2명으로 조정함.
- 직무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3조)
 - 자치법규 제·개정 등 입법관련 자문
 - 의사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등 그밖에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의 자문 등
- 자문처리 실적부 비치(안 제6조 신설)
 - 자문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처리 실적부를 비치하여 정리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 장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제 출 자 : 장성군의회의회장(김연수 의원)

○ 제출일자 : 2022. 12. 13.

○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능력과 성과 중심의 실적가산점 제도 운영을 위하여 실적가산점 부여기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개정(안 제6조)
 - 7급 이상 응시연령을 8급이하와 동일하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 정비(별표 4)
 - 전산직렬을 필수자격증 요건이 적용되는 특수직급에서 제외
 - 기타직렬 응시요건 기준 일원화 *4개 직렬(8개 직류) 해당
-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에 전산직렬 자격증 추가(별표 5의2)
 - 타 직류와 형평성을 고려해 8·9급 시험 가산점 대상이 되는 기능사 자격증 및 ‘20년 신설된 빅데이터 분석기사를 추가
-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중 전산직렬을 신설(별표 7의3)
 - 특수직급 응시자격증(별표 7의3)에서 전산직렬을 삭제함에 따라 가산대상 자격증에서 전산직렬란을 신설

○ 의결결과 : 원안가결

3. 장성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제 출 자 : 최미화 의원(문화관광과)
- 제출일자 : 2022. 12. 13.
- 제안이유
 - 장성군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향교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육성지원사업 대상(안 제3조)
 - 문화예술교육 사업, 문화행사 사업, 전통의례 사업, 인력양성 사업
 - 사업 수행 장소 (안 제4조)
 - 지원신청 및 적정성 판단 지원결정(안 제5조 ~ 안 제6조)
 - 교부 결정의 취소 및 실적보고·지도감독(안 제8조 ~ 안 제10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4. 장성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제 출 자 : 서춘경 의원(환경과)
- 제출일자 : 2022. 12. 13.
- 제안이유
 -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순환 가능한 영농폐기물 처리하고 친환경농업을 도모하는 등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처리, 예산지원 등, 수거위탁, 수거의 날 지정 사항(안 제5조 ~ 제9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5.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김연수 의원(민원봉사과)

○ 제출일자 : 2022. 12. 13.

○ 제안이유

- 농지법 시행에 따른 가설건축물 설치 시 나타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안 제26조제2항제4호)
가설건축물 높이를 3미터에서 4미터로 완화.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6.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 제출자 : 장성군수
- 제출일자 : 2022. 12. 13.
- 주요내용

가. 세 입 : 601,625백만원

- 1) 삭 감 : 해당없음
- 2) 증 액 : 해당없음
- 3) 회계별 내역

(단위: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심 사 결 과			인정액
		세 입			
		삭감액	증 액	순삭감액	
계	601,625,220	-	-	-	601,625,220
일반회계	590,188,297	-	-	-	590,188,297
특별회계	11,436,923	-	-	-	11,436,923

- 4) 삭감조서 : 해당없음
- 5) 증액조서 : 해당없음

나. 세 출 : 601,625백만원

1) 삭 감 : 해당없음

2) 증 액 : 해당없음

3) 회계별 내역

(단위: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심 사 결 과			
		세 출			인 정 액
		삭 감 액	증 액	순삭감액	
계	601,625,220	-	-	-	601,625,220
일반회계	590,188,297	-	-	-	590,188,297
특별회계	11,436,923	-	-	-	11,436,923

4) 삭감조서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 업 명	요구액	삭감액	인정액
계				
	해 당 없 음			

나) 특별회계

(단위:천원)

예산과목	사 업 명	요구액	삭감액	인정액
계				
	해 당 없 음			

5). 증액조서

가) 일반회계

(단위:천원)

예산과목	사 업 명	요구액	증액	인정액
801-01	해 당 없 음			

나) 특별회계

(단위:천원)

페이지	예산과목	사 업 명	요구액	증액	인정액
	계				
		해 당 없 음			

○ 의결결과 : 원안가결

7. 2022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출일자 : 2022. 12. 13.

○ 주요내용

- 변경사유 : 2022년도 회계연도 내 여유자금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예치하여 재원의 효율적 활용
- 재 원 :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받은 예탁금, 이자수입,
수익금 등
- 용 도 : 재원이 부족한 다른 회계 및 기금 충원

(단위:천원)

구 분	항 목	경정	기정	증감	비고
수 입	계	30,589,715	1,538,557	29,051,158	
	예수금회수	13,083,071	1,383,071	11,700,000	
	예치금수입	17,424,639	152,450	17,272,189	
	이자수입	82,005	3,036	78,969	
지 출	계	30,589,715	1,538,557	29,051,158	
	일반예치금	30,589,715	1,538,557	29,051,158	

- 자금수지 총괄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
합 계	30,589,715	10,195,005	20,394,710	합 계	30,589,715	10,195,005	20,394,710
전입금				비용자성사업비			
보조금				용자성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용자금회수 (이자포함)				기본경비			
예탁금 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13,083,071	8,800,000	4,283,071	예치금	30,589,715	1,383,071	29,206,644
예수금	17,424,639	1,383,071	16,041,568	차입금원리금상환			
이자수입	82,005	11,934	70,071	예수금원리금상환	-	8,811,934	-8,811,934
타수입				기타지출			

○ 의결결과 : 원안가결

8. 장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총무과장)

○ 제출일자 : 2022. 12. 13.

○ 제안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 공개심의회 구성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변경(안 제2조제3항)

· (현행)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

(개정)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

- 심의회 구성 변경(안 제10조제1항)

· (현행) 7인이내 → (개정) 5명이상 7명이하

· (현행) 군수가 위원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한 사람

(개정) 부군수

- 심의회 위원위촉 구성 변경(안 제10조제2항)

· (현행) 위원은 군수가 정보공개 업무에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개정) 당연직 위원은 업무 관련 부서장, 위원의 3분의 2는 행정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초과 금지

- 당연직 위원 구성 변경(안 제10조제3항) - 삭제

○ 의결결과 : 원안가결

9. 장성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자 : 장성군수(세무회계과장)

○ 제출일자 : 2022. 12. 13.

○ 제안이유

-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과 겸임금지 및 결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검사위원의 기밀엄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결산검사위원의 일비가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동일액으로 지급되고 있어 인근 지자체 수준으로 인상이 필요함.

○ 주요내용

-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 및 조문 정비(안 제3조)
 - 선임 방법과 관련하여 위원 중 1인은 군수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 삭제 및 지방자치법 규정을 제64조에서 제73조로 조문 정비 (지방자치법 2018. 12. 24. 개정)
- 결산검사위원의 겸임금지 규정 신설 및 결격의 범위 확대(안 제5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3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회는 장성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는 결산검사위원의 겸임금지 규정 마련
 - (현행)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군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개정)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군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관계 법령 개정 관련 용어 정비(안 제6조, 제11조, 제12조)
 - (현행)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
 - (개정)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현행)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출장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 (현행)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
(개정)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때
-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안 제7조)**
 - (기존) 1. 세입·세출결산 → (개정) 1. 결산개요
 - 2. 계속비, 명사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2. 세입·세출결산
 -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3. 재무제표
 -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4. 성과보고서
 - 5. 금고의 결산 5. 결산서의 첨부서류
 - 6. 금고의 결산
- **결산검사위원 일비 지급기준 상향(안 제13조 별표2)**
 -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현행 120,000원에서 130,000원으로 상향 조정
- **결산검사위원의 기밀엄수 규정 마련(안 제14조)**
 - 검사위원은 위촉기간 및 해촉 이후에도 결산검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토론요지

- 안 제14조의 기밀엄수 조항의 기밀이라는 표현은 결산검사 업무를 함에 있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
- 검사위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제6조에 “위원의 책무”를 신설하자는 수정 의견 제출

○ 수정안 요지

- 안 제14조는 삭제
- 제6조(위원의 책무) 신설
 제6조(위원의 책무)①위원은 수검기관 등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검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검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에 알리거나 검사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위원은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주의의무의 한계, 책임 등을 다하여야 한다.
-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를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한다.
- 기타 사항은 개정안대로 수정한다.

○ 의결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신설> 제6조~제13조 (생략) 제14조(기밀엄수 등) 신설 제15조 (생략)	제6조(위원의 책무) ①위원은 수검기관 등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검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검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외부에 알리거나 검사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위원은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주의의무의 한계, 책임 등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제14조 (생략) 제14조 삭제 제15조 (생략)

10. 장성군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출자 : 서춘경 의원(농업축산과)

○ 제출일자 : 2022. 12. 13.

○ 제안이유

- 최근 식생활의 변화로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국내 생산량 및 해외 수입량 증가에 따른 쌀값 하락으로 쌀 생산 농가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어,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고품질 쌀 소비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고품질 쌀 생산·유통체계, 소비촉진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안 제3조)
- 고품질 쌀 소비촉진 활동 등 쌀 종합대책 마련과 효과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장성군 쌀 종합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안 제4조 ~ 제12조)
- 고품질 쌀 생산자와 유통업자 등에 대한 지원사항 규정(안 제13조)
- 쌀 소비촉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 규정(안 제14조)
-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안 제15조 ~ 제16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1. 진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

○ 제출자 : 장성군수(건설과장)

○ 제출일자 : 2022. 12. 13.

○ 제안이유

- 진원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소재지를 서비스기능 확충으로 배후마을에 대한 거점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생활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2021년도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아 2025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전문 기술인력 투입 및 네트워크 활용으로 양질의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로 위탁 시행함에 따라 계속비 사업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계속사업비 : 당초 4,000백만원(국비 2,800, 군비 1,200)
 변경 864백만원(국비 605, 군비 259)
- 계속비기간 : 당초 2021~2025(5년) / 변경 2021~2022(2년)

기간	사업비 (백만원)	내 용
계	864	
2021년	543	·기본계획 용역, 공기관 위탁사업비
2022년	321	·기본계획 용역, 보상비, 공기관 위탁사업비

○ 의결결과 : 원안가결